

#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 
지난 제72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임.

### 1. 제정이유

-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. 1. 12 전문개정되어 2001. 1. 13부터  
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 
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
-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·납골의 장려 등 책  
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-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·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,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붕괴·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함(안 제6조, 안 제7조)
- 일반적인 분묘의 설치 및 연장기간은 법률에 정한 기준을 준용함(안 제8조)
- 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둘 수 있는 공설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허용 규정을 정함(안 제17조)

### 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(2000. 1. 12)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·납골의 적극적인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위생상의 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 조례안은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에서 시달된 장사시설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현행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설묘지 관리 규정 등을 포함하여 화장장·납골시설 등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.
- 한편, 동 조례제정으로 현행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됨.
-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수준을 제고하고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의 수립시행 등 향후 발전적인 장사관련 정책의 추진과 화장·납골의 확산 및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등 전체적인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점진적인 조치로 사료됨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,

안 제4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무사항 중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과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업무범위를 정해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,

안 제5조에서는 묘지·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·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묘지 등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안 제5조와 관련하여 지난 2003. 7. 28~2004. 5. 28일까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중인 파주시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과제가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.

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묘지 등 장사시설이 붕괴·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였음.

- 안 제8조에서는 분묘의 설치 및 연장기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등 장사시설의 선진화와 현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.
- 안 제11조 내지 제21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(공설묘지)의 사용허가, 사용자의 범위, 사용료 및 관리비, 사용료 등의 감면, 묘지의 사전매매, 사용허가의 취소 등 공설장사시설(공설묘지)의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구성이나 조문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14조(사용료 및 관리비 등)제1항 별표2와 관련하여 현행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서는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설묘지를 사용허가 할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액의 5할을 가산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었으나,
- 동 조례에서는 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민원발생 소지가 우려됨으로 공설장사시설(공설묘지)의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조항의 삽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동 조항의 삽입으로 관외 거주자들의 관내 묘지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되며, 동 조항이 삽입되지 않을 경우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 거주자들이 부족한 관내 공설묘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공설장사시설(공설묘지)의 사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비가 현행 1기당(6.6㎡)당 31,700원에서 245,000원으로 대폭 인상함으로서 다소 무리한 인상으로 보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라 판단됨으로 당사자들의 사전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이상과 같이, 동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묘지의 증가억제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화장·납골의 확산과 적극적인 장려를 통한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, 선진화 및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을 통한 보건위생상의 危害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3조(묘지 등의 수급계획)**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장사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·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·장기계획(이하 “시·도묘지등 수급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, 시·도묘지등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매장자수·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
3. 묘지·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존의 묘지·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.
5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·도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·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·장기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묘지등 수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·도 및 시·군·구묘지등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한다.